

이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2002. 3. 20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년 9월 18일 이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1년 9월 19일
다. 상정일자 : 제4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2001.9.25)
제5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2002.3.19)
자치행정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가. 제안이유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되는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대상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될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이를 운영할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원활한 운영을 지원코자 함

나. 주요골자

【주민자치센터관련】

-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함(안 제4조)
- 자치센터의 시설등은 읍면동장의 요구에 의해 시장이 정함(안 제6조)
- 재정형편 등으로 일시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연차별 계획수립(안 제6조)
- 자치센터는 읍면동장 책임하에 운영, 민간위탁 및 사용료 징수(안 제7조, 10조)
- 주민의 이용과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 규정(안 제11조)

(제52회 - 2차 본회의)

-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실비보상 근거(안 제13조)
-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를 시장에게 보고(안 제14조)

【주민자치위원회관련】

-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심의 기구(안 제15조, 제16조)
- 주민자치위원(15인 이상 25인 이내)은 읍면동장이 위촉(안 제17조)
-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실비 보상(안 제23조)
-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될 읍면동의 개발자문위원회 폐지(안 부칙 제3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해수)

- 본 조례안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으나, 주민들의 반대 청원이 있었는바, 운영에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는 현재 읍,면,동의 업무를 감안해 볼 때 인력 등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과 같이 조문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안제5조 제1항에서 “자치센터는…… 수행하여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하였는바, 입법내용의 의미를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예시하면”으로 예를 들어 표현한 것은 입법내용 표현의 명료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가 필요함.

〈수정의견〉

“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의 및 주민자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제10조 제2항에서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장과 위원회의 협의 하에 정한다”로 하고 있는데, 징수에 대한 주체가 불분명 하므로 “읍,면,동장과”를 “읍,면,동장 이”로, “위원회의 협의”를 “위원회와 협의”로 합이 타당하여 검토가 필요 함.

- 부칙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주민자치센타가 설치되어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 읍·면·동에 대하여는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읍·면·동 실정으로 볼 때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를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안) 부칙 3조 다른 조례의 개정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효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만장일치)

7. 기타사항 : 없음